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2. 5. 17.

발의의원 : 강철우·강창남·류영수·김재권

1. 제안이유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통해 장애인 산모와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2. 주요내용

- 대상(안 제3조):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 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 기준 및 지원액(안 제4조)

· 신생아 1명당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금액	비 고
장애등급 1~2급	1,500,000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장애등급 3~4급	1,000,000원	
장애등급 5~6급	700,000원	

- 신청 등(안 제5조):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안 제6조) : 읍·면장은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환수(안 제7조):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하여야 함
- 대장관리(안 제8조): 군수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면장은 출산 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보호)

- 집행부 의견수렴 : 2012. 5.

- 그 밖에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등급 1 ~ 2급: 150만원
2. 장애등급 3 ~ 4급: 100만원
3. 장애등급 5 ~ 6급: 7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만 기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주 소	(전화:)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성 명		계좌번호			
<p>「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확인사항	대상자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년 개월)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통장 사본 1부					

